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호영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703 발의연월일: 2021. 6. 9.

발 의 자 : 안호영 · 주철현 · 윤미향

장철민 • 양이원영 • 윤준병

이용호・송옥주・김수흥

한병도 의원(10인)

제안이유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집중호우와 태풍에 의한 극한 홍수는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발생시키는 가운데, 기후변화감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나, 현행법은 기후변화감시와 관련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국가 차원의 체계적 기후변화감시 관리체계 구축을 실현하기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현행법에 기후변화감시를 위하여 관측망을 구축하고 기상청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안 전이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아울러, 현행법을 일반 국민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체계를 정비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꿈은 물론, 그간의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수문기상 관련 규정 신설로 국가의 책임성 강화
 - 1) 수문기상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4호의4 신설).
 - 2) 기상재해대응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상학적 가뭄을 포함하는 수문기상을 감시 및 예측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나. 기후변화 감시의 강화

- 1) 기후변화감시 관측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3 신설).
- 2)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등 대책 마련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 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수집한 기후변화에 관한 영향관계 자 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1조제2항).
- 3)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 작성 등 기후변화의 추세를 예측하 도록 함(안 제21조제3항).

다. 기상관측 정보의 공동활용 기반 확대

- 1) 기상청장 외의 자가 구축·운영하는 기상 관측시설에서 관측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 2) 기상예보 및 특보를 수신하기 위하여 무선통신 장비를 설치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의2 신설).
- 라. 개별법에 규정되어 있던 국가기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기본법으로 통합

- 1) 기상관측의 표준화 및 기상산업의 진흥에 관한 노력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4조의2 및 제4조의3 신설).
- 2) 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 (안 제7조).
- 3) 고층 기상관측을 위한 고층기상 관측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의4 신설).

마. 미비규정의 보완 · 신설 등

- 1) 기상현상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 2) 예보의 제한 및 예외 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17조).
- 3) 연구개발사업 협약 대상 기관에 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함(안 제32조).
- 4) 국제협력의 추진 업무에 기후분야를 추가하는 등 협력 업무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33조).
- 5) 기상과학관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설립 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35조의6).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氣象)이란"을 "(氣象)이란 비·눈·구름·태풍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지면"을 "땅의 결빙·서리·이슬 등 지면"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내륙"을 "물안개·하천 결빙 및 증발·유량·수위·풍랑·해일·너울·해무 등 육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8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4. "수문기상"(水文氣像)이란 유역별 강수, 토양수분, 가뭄 등과 같이 대기와 지면 사이에 물의 순환이 수자원에 영향을 주는 기상 현상을 말한다.

나. 기후 전망 및 예측

다. 기후변화 감시·영향조사 및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수립 제4조제1호 중 "적정한 정보"를 "정보"로 한다.

제1장에 제4조의2 및 제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기상관측의 표준화 의무) 기상청장은 기상관측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상관측장비의 운용 및 관측의 기준, 방 법, 관측환경 등의 표준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3(기상산업의 진흥 의무) 기상청장은 보유하고 있는 기상정보 가 각종 산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민간 활용을 촉진하는 등 기상관 런 산업의 진흥과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7조(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 ①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기상관측망을 구축하여 기상현상을 관측하여야 한다.
 - ② 기상청장은 「기상관측표준화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관측기관"이라 한다)의 관측시설을 제1항에 따른 기상관측망에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 ③ 관측기관의 장은 관측시설을 설치·교체·이전 또는 폐지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상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④ 기상관측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지상기상 관측망
 - 2. 해양기상 관측망
 - 3. 고층기상 관측망
 - 4. 기상레이더 관측망
 - 5. 기상위성 관측망
 - 6. 항공기상 관측망
 - 7. 기후변화감시 관측망

- 8.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축하는 관측망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의 제목 "(해양기상 및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 등)"을 "(해양기상 및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환경부령"을 "대통령령"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기상위성 관측망 운영 등)"을 "(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21조"를 "제14조의2에따른 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에 관한 정보 및 제21조"로 한다.

법률 제17424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에 제8조의3 및 제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기후변화감시 관측망의 구축·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제21 조에 따른 지구대기감시관측자료의 수집 및 기후변화감시를 위하여 기후변화감시 관측망을 구축·운영하고, 기후변화 영향조사 및 대책 수립 등을 위하여 관측된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감시 관측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의4(고층기상 관측망의 구축·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제7조에 따른 관측망의 관측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층기상 관측망을 구축·운영하고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예보 및 특보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측된 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층기상 관측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관측자료"를 "제1항에 따른 관측자료 또는 제2항에 따른 관측정보"로 한다.

- ② 기상청장은 예보 및 특보를 하거나 기상에 관한 연구 등을 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외의 자가 구축·운영하는 기상 관측시설(이동형 기상장비를 포함한다)에서 관측된 정보가 필요한 경우 그 소유자에게 관측시설의 공동활용 및 관측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선박·항공기 및 관측시설 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정보"를 "관측정보"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상청장 외의 자가 기상관측 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려는 경우 사전에 기상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의 제목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를 "(수문기상의 감시·예측 및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기상청장은 집중호우에 의한 홍수 등 기상재해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문기상을 감시하고 예측하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수문기상의 감시·예측 및 정보 제공에 필요한 사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의 종류·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상의 목적을 위한 경우와 「기상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기상예보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기상사업자"라 한다)는 예보(제14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예보와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예보는 제외한다)를 할 수 있다.

제5장에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무선통신 장비 설치 비용의 지원) 기상청장은 제13조에 따른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 및 특보와 제14조에 따른 선박에 필요한 예보 및 특보를 수신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무선통신 장비를 설치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 중 "기후감시"를 "기후감시, 기후변화 영향조사"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지구대기감시관측"을 "지구대기감시관측자료"로, "행하는 관측을 말한다. 이하 같다]자료"를 "관측한 자료를 말한다]"로 하

- 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기후변화"를 "제3항에 따른 기후변화"로 한다.
 - ② 기상청장은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등 대책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에 관한 영향관계를 조사하여야 하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수집한 기후에 관한 영향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기상청장은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등 기후변화의 추세를 예측하여야 한다.

제3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32조(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이를 연구하게 할 수 있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 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7.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연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자금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제1항제1호 중 "국제기상 등 협력체의 국내 설립"을 "국제기상 기후 정책 수립 및 이행"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2. 기후 관련 국제협력체와의 기상기후 대응 및 관련 기술 협력
- 3. 기상기술 향상을 위한 국가 간 지원ㆍ협력

제35조의6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운영"을 "운영 및 사전평가의 절차와 방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상과학관을 설립·운영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설립 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실시한 후 기상청장과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48조 중 "제17조 본문"을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제51조제1항 중 "제17조 본문"을 "제17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상관측표준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8조(기상관측망 구축 및 관리) ① 기상청장은 관측기관의 관측시설에 대하여 관측시설의 종류, 기상관측환경 등에 관한 국제표준 (세계기상기구 및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하는 표준을 말한다)을 고려하여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 ② 기상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때 제1항에 따른 관측시설의 등급을 고려할 수 있다.
 - 1.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상관측자료의 정확도 확보를 위한 지원
 - 2. 제10조제5항에 따른 기상관측자료의 품질관리를 위한 기술지도
 - 3. 「기상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상정보시스템(이하 "기상정

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한 기상정보의 보급 및 이용

③ 제1항에 따른 등급 부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 령으로 정한다.

제12조제4항을 삭제한다.

② 기상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개 정 힞}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氣象)이란 비・눈・구 1. "기상"(氣象)이란 대기의 여 📗 러 현상을 말한다. 름·태풍 등 --. 2. "지상"(地象)이란 기상과 밀 2. -----접한 관련이 있는 지면 또는 ----- 땅의 결빙• 서리·이슬 등 지면 -----지중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 을 말한다. 2의2. 삭 제 3. "수상"(水象)이란 기상 또는 3. ------지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륙의 하천, 호수 또는 해양 물안개ㆍ하천 결빙 및 증발ㆍ 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을 유량・수위・풍랑・해일・너 말한다. 울·해무 등 육상 -----3의2. 삭 제 4. ~ 4의3. (생 략) 4. ~ 4의3. (현행과 같음) 4의4. "수문기상"(水文氣像)이 <신 설> 란 유역별 강수, 토양수분, 가 뭄 등과 같이 대기와 지면 사 이에 물의 순환이 수자원에 영향을 주는 기상현상을 말한 <u>다</u>. 5. ~ 7. (생략) 5. ~ 7. (현행과 같음)

8. "기상업무"란 다음 각 목의 8. ------업무를 말한다. ------

가. (생략)

 나.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 수

 립 및 영향조사, 기후변화

 감시 및 기후 예측

<신 설>

라. (생 략)

9. ~ 14. (생략)

-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기상 업무에 관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국민의 생활안정 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식하고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 기상업무에 관한 <u>적정한 정</u>
 보의 생산 및 전달체계의 유
 지에 관한 사항

2. ~ 4. (생 략)

<신 설>

<u>.</u>
가. (현행과 같음)
나. 기후 전망 및 예측
<u>다. 기후변화 감시·영향조사</u>
및 기후변화에 대한 대책
<u>수립</u>
라. (현행과 같음)
9. ~ 14. (현행과 같음)
제4조(국가의 책무)
1 <u>정보</u>
2. ~ 4. (현행과 같음)
제4조의2(기상관측의 표준화 의
무) 기상청장은 기상관측의 정
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상관측장비의 운용 및 관측의
기준, 방법, 관측환경 등의 표준

<신 설>

제7조(관측망의 구축을 통한 기상 | 제7조(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 ① 관측)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기상관측망을 구축 하여 관측하여야 한다. 해양기 상 및 항공기상에 대한 관측망 의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 7조의2에서 따로 정한다.

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3(기상산업의 진흥 의무) 기상청장은 보유하고 있는 기상 정보가 각종 산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민간 활용을 촉진하는 등 기상관련 산업의 진흥과 활 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 다.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에 관한 정 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기상관측망을 구축하여 기 상현상을 관측하여야 한다.

- ② 기상청장은 「기상관측표준 화법 시3조제1항 각 호에 해 당하는 자 중 기상관측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관측기관" 이라 한다)의 관측시설을 제1항 에 따른 기상관측망에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 ③ 관측기관의 장은 관측시설을 설치 • 교체 • 이전 또는 폐지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상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제7조의2(해양기상 및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 등) ① ~ 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해양기상 및 항 공기상 관측망의 구축 · 관측 등 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8조(기상위성 관측망 운영 등) 제8조(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

한다.

- ④ 기상관측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지상기상 관측망
- 2. 해양기상 관측망
- 3. 고층기상 관측망
- 4. 기상레이더 관측망
- 5. 기상위성 관측망
- 6. 항공기상 관측망
- 7. 기후변화감시 관측망
- 8.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여 구축하는 관측 망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 정한 사항 외에 기상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2(해양기상 및 항공기상 관측망의 구축·운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대통령령----

- ① 기상청장은 제7조에 따른 관 | 운영 등) ① -----측망의 관측을 지원하거나 제21 조에 따른 기후감시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기상위 성 관측망을 구축・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 • 활용할 수 있다.
- ② (생략) 법률 제17424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

<신 설>

법률 제17424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

<신 설>

----- 제14 조의2에 따른 우주공간의 물리 적 현상에 관한 정보 및 제21조

② (현행과 같음) 법률 제17424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의3(기후변화감시 관측망의 구축・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제21조에 따른 지구대기감시관 측자료의 수집 및 기후변화감시 를 위하여 기후변화감시 관측망 을 구축·운영하고, 기후변화 영향조사 및 대책수립 등을 위 하여 관측된 정보를 수집 • 활용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후변화감시 관측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집 •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 통령령으로 정한다.

법률 제17424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

제8조의4(고층기상 관측망의 구축

청) ① (생략) <신 설>

<신 설>

·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제7 조에 따른 관측망의 관측을 지 원하기 위하여 고층기상 관측망 을 구축·운영하고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예보 및 특보 등 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측된 정 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층기상 관측 망의 구축・운영 및 정보의 수 집 •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특수 관측자료의 제공 요 제9조(특수 관측자료의 제공 요 청) ① (현행과 같음)

> ② 기상청장은 예보 및 특보를 하거나 기상에 관한 연구 등을 하기 위하여 기상청장 외의 자 가 구축 • 운영하는 기상 관측시 설(이동형 기상장비를 포함한 다)에서 관측된 정보가 필요한 경우 그 소유자에게 관측시설의 공동활용 및 관측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 을 받은 선박·항공기 및 관측 시설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④제1항에 따른 관측자료의 제공제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제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관측 결과 등의 발표) 기 상청장은 기상관측 결과 및 <u>정</u> 보의 신속한 발표가 공공의 안 전과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방송사· 신문사·통신사, 그 밖의 보도 관련 기관(이하 "보도기관"이라 한다)을 이용하거나 다른 적절 한 방법을 통하여 즉시 발표하 여야 한다.

<신 설>

제13조의2<u>(기상학적 가뭄의 예보)</u> <신 설>

	<u>(4)</u>	- —
	제1항에 따른 관측자료 또	느
	제2항에 따른 관측정보	-
		-
제	11조(관측 결과 등의 발표) (1
		관
	<u>측정보</u>	-
		-
		-
		-
		-
		-
		-
	② 기상청장 외의 자가 기상	관
	측 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	려
	는 경우 사전에 기상청장과	협
	의하여야 한다.	
제	13조의2(수문기상의 감시・	예
	측 및 기상학적 가뭄의 예보	1)
	① 기상청장은 집중호우에 의	한
	홍수 등 기상재해에 대한 효	율
	적인 대응 등을 지원하기 위	하
	여 수문기상을 감시하고 예측	하

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생 략)

<신 설>

제17조(예보 및 특보의 제한) 기 제17조(예보 및 특보의 제한) ① 상청장 외의 자는 예보 및 특보 를 할 수 없다. 다만, 국방상의 목적을 위한 경우와 「기상산업 진흥법 시6조에 따라 기상예 보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기 상사업자"라 한다)가 예보(제14 조의2에 따른 예보는 제외한다) 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신 설>

-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 음)
- ③ 제1항에 따른 수문기상의 감 시 · 예측 및 정보 제공에 필요 한 사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상 학적 가뭄의 예보의 종류 • 내용 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단서 삭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방상 의 목적을 위한 경우와 「기상 산업진흥법 | 제6조에 따라 기 상예보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기상사업자"라 한다)는 예보 (제14조제1항에 따른 항공기의 안전운항에 필요한 예보와 제14 조의2제1항에 따른 예보는 제외

<신 설>

제20조(기후감시 등을 위한 노력 제20조(기후감시 등을 위한 노력 의무) 기상청장은 기후감시. 기 후에 관한 연구 및 예측능력의 향상, 기후관련 정보의 활용 촉 진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 다.

① 기상청장은 지구대기 등 기 후를 감시하고, 지구대기감시관 측[지구대기감시를 위하여 성층 | 측자료-------권 오존층, 대기 중의 주요 온실 가스 농도, 지역 대기질(대기질) 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가스상 ·입자상 물질 등에 대하여 행 하는 관측을 말한다. 이하 같다] 한 자료를 말한다]-----

한다)를 할 수 있다. 제19조의2(무선통신 장비 설치 비 용의 지원) 기상청장은 제13조 에 따른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 및 특보와 제14조에 따른 선박 에 필요한 예보 및 특보를 수신 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 는 무선통신 장비를 설치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 에서 그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의무) ----- 기후감시, 기 후변화 영향조사-----제21조(기후감시 및 영향조사 등) 제21조(기후감시 및 영향조사 등) -----지구대기감시관

자료를 수집 • 분석 및 관리하여 그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고하여 야 하다.

대책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에 관한 영향관계를 조사하 여야 하고,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등 기후변 화의 추세를 예측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제1항에 따른 지구대기감시 관측자료의 수집 · 분석 · 관리 및 공고와 제2항에 따른 영향관 계 조사 및 기후변화 추세 예측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② 기상청장은 기후변화에 대한 | ② 기상청장은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 등 대책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에 관한 영향관계를 조사하여야 하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의 운영에 관한 법률ㅣ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 이라 한다)에서 수집한 기후에 관한 영향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 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기상청장은 국가 기후변화 표준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등 기후변화의 추세를 예측하여야 한다.

<u>4</u>	 		
	 제3항에	따른	기후변
화	 		

부령으로 정한다.

- 제32조(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 | 제32조(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 사업의 추진) ① 기상청장은 기 상업무에 관한 기술을 중점적으 로 개발하기 위하여 기상업무에 | 관한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 고, 매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 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이를 연구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 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 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소속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 1. 국공립연구기관
 -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 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 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 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 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을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 제14조의

- 사업의 추진) ① 기상청장은 기 상업무에 관한 기술을 중점적으 로 개발하기 위하여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이하"연구 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 여야 한다.
 -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 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이를 연구하게 할 수 있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 기관
 -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 른 학교
 -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 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 연구기관
 -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 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 성에 관한 법률 | 제2조에 따

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 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 발전담부서 중 기상업무에 관 런된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하 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 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전문대학 및 기

 술대학
- 6.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상업무 분야의

 비영리법인
-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연 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연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자금을 출연금으로 지급 할 수 있다.
- 제33조(국제협력의 추진) ① 기상 저 청장은 기상업무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 여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추 진하며, 기상업무 분야의 기술 발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 극 참여하여야 한다.
 - 1. 국제기구 회원국의 합의에 따른 국제<u>기상 등 협력체의</u>

- 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
 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

 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
 구기관
 -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 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 단체출연연구원
 -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 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 <u>7.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u> 사
 -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관·단체
 -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연 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연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자금을 출연금으로 지급 할 수 있다.

세33조(국제협력의 추진) ①
1	

1. --------- 국제기상기후 정책 수립 국내 설립

- 2.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 기후 관련 국제협력체의 기후 정보서비스 및 기후변화 관련 기술개발
- 3.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와 기 | 술의 교환

4. • 5. (생략)

② ~ ④ (생 략)

제35조의6(기상과학관의 설립ㆍ 제35조의6(기상과학관의 설립ㆍ 운영) ① (생 략)

<신 설>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과학관의 설립ㆍ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하여 특보를 한 자는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및 이행

- 2. 기후 관련 국제협력체와의 기상기후 대응 및 관련 기술 협력
- 3. 기상기술 향상을 위한 국가 간 지원ㆍ협력

4.•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운영)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에 따라 기상과학관을 설립 · 운영하고자 하는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설립 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실시한 후 기 상청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운영 및 사전평가의 절차와

제48조(벌칙) 제17조 본문을 위반 제48조(벌칙) 제17조제1항-----

벌금에 처한다.	,
제51조(과태료) ① <u>제17조 본문</u> 을	제51조(과태료) ① <u>제17조제1항</u>
위반하여 예보를 한 자에게는 1	
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